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전수곤 의원 외 6인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성주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복무선서, 비상근무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군민의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성주군의회 공무원의 복무 선서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완수, 근무기강 확립, 친절·공정, 복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7조)

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라. 겸임근무,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마. 연가 계획수립·허가,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제12조)

바.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사. 휴가기간의 초과, 국외여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제1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성주군 복무조례」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1. 12. 17. ～ 12. 21.)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 성주군의회 공무원의 복무, 당직, 연가,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성주군의회 공무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